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89
----------	-------

발의연월일 : 2025. 7. 21.

발 의 자 : 박균택 · 김기표 · 박지혜
김주영 · 이건태 · 권칠승
이성윤 · 김준형 · 박해철
박홍배 · 박상혁 · 박희승
황명선 · 정준호 · 양부남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며,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징계령을 따르는 등 그 책임과 의무는 공무원에 준하면서도, 처우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특히, 청원경찰은 ‘보수등급제’가 적용되어 일정 재직기간에 따라 순경, 경장, 경사, 경위에 준하는 보수를 받고 있으나,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급하기까지 무려 15년이 소요되는 등 유사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이나 방호직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길어 형평성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기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아울러 최근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복지공무원이나 민원공무원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해 청원경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정해진 경비구역 외 직무수행에 제약이 있어 긴급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현장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보수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처우를 개선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청원주가 경비구역 외에서 직무 수행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법령 간 충돌을 해소하고 청원경찰의 직무 효율성 및 공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등).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원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변위협이 명백하거나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경비구역 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한시적인 경비가 필요한 경우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전시·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소산(疏散)하거나, 이를 대비한 훈련 등의 사유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이나 물자의 운반에 따라 호송이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청원경찰이 직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거나 이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절차, 범위, 준수사항 등 직무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준용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5년”을 “6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15년”을 “6년”으로, “23년”을 “1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23년”을 “13년”으로, “30년”을 “21년”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30년 이상”을 “21년 이상 30년 미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재직기간 30년 이상: 경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경찰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3조의2(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직무 특례)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배치된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청원주는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구역 외의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u> <u>1. 공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에 대한 신변위협이 명백하거나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u> <u>2. 경비구역 외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장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한시적인 경비가 필요한 경우</u> <u>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식행사에서 질서를 유지하거나 위험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u>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는 원칙적으로 관여할 수 없으나, 관할 경찰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보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전시·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상황에 따라 해당 기관이 소산(疏散)하거나, 이를 대비한 훈련 등의 사유로 경비가 필요한 경우

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재산이나 물자의 운반에 따라 호송이 필요한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에서 청원경찰이 직무상 공무원으로 간주되거나 이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비구역 외 직무 수행이 필요한 경우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생략)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u>감안하여</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직기간 <u>15년</u> 미만: 순경 2. 재직기간 <u>15년</u> 이상 <u>23년</u> 미만: 경장 3. 재직기간 <u>23년</u> 이상 <u>30년</u> 미만: 경사 4. 재직기간 <u>30년</u> 이상: 경위 <u><신설></u> ③ (생략)	<u>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요건, 절차, 범위, 준수사항 등 직무 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6조(청원경찰경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u>준용하여</u> -----. 1. -----<u>6년</u>----- 2. -----<u>6년</u>-----<u>13년</u>----- ----- 3. -----<u>13년</u>-----<u>21년</u>----- ----- 4. -----<u>21년</u> 이상 <u>30년</u> 미만----- 5. 재직기간 <u>30년</u> 이상: 경감 ③ (현행과 같음)
--	--